

## 충청북도세감면조례개정조례(안)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00년 12월 16일
- 회부일자 : 2000년 12월 18일

3. 제안이유

현재 운영중인 충청북도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0년 12월 31일자로 자동 폐지(현행 조례 부칙 제2조)됨에 따라

- 국가유공자·장애인·교통·주택건설 등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한 분야는 적용시한을 3년간 연장하고, 국가 유공단체 등 지방세법에 감면내용이 규정되는 분야는 폐지
-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이전하는 벤처기업에 대하여는 세제를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하며,
- 기타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한 조문과 용어를 정리하는 등 감면조례를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4. 주요골자

가. 세제지원을 위한 감면규정 폐지

1) 국가유공단체에 대한 감면

-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이 수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,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, 취득세·등록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 하던 것을

⇒ 지방세법(제270조 제4항)에 감면규정이 신설되어 감면규정 삭제

## 2) 한국산업안전관리공단에 대한 감면

- 한국산업안전관리공단이 사업에 직접 하용하기 위하여,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던 것을  
⇒ 지방세법(제278조 제5항)에 감면규정이 신설되어 감면규정 삭제

## 3)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대한 감면

-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던 것을  
⇒ 지방세법(제273조 제1항)에 감면규정이 신설되어 감면규정 삭제

## 나. 세제지원을 위한 감면규정 신설

### ○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이전에 대한 감면

벤처기업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,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(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, 제18조의 4)

## 다. 감면규정중 일부세목 및 조문 삭제

### 1)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

- 국가 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·배우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직계존·비속 등의 명의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일정규모의 자동차 1대에 대하여 취득세·등록세 및 면허세를 면제하던 것을

⇒ 자동차등록에 따른 면허세부과 규정이 지방세법에서 삭제됨에 따라 조문을 삭제(개정 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1항, 감면조례 제2조제3항)

- 국가유공자가 취득·등록한 배기량 2,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도세를 면제하고 있으나, 종전에 승합 자동차로 분류되어 감면혜택을 받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승합 자동차가

자동차관리법의 개정으로 승용 자동차로 전환됨에 따라  
⇒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합 자동차를 승용 자동차의 범위에 규정  
하여 감면(제2조 제3항)

## 2)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

-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(시각의 경우 4급까지)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·배우자 또는 장애인의 직계존·비속 등의 명의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일정 규모의 자동차 1대에 대하여 취득세·등록세 및 면허세를 면제하던 것을  
⇒ 자동차 등록에 따른 면허세 부과 규정이 지방세법에서 삭제됨에 따라 이를 삭제(제3조 제1항)
- 장애인이 취득·등록한 배기량 2,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도세를 면제하고 있으나, 종전에 승합자동차로 분류되어 감면혜택을 받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가 자동차 관리법의 개정으로 승용자동차로 전환됨에 따라  
⇒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를 승용자동차의 범위에 규정하여 감면(제3조 제1항)

## 3)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

- 자동차 매매업의 등록을 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와 면허세를 면제하던 것을  
⇒ 자동차 등록에 따른 면허세 부과 규정이 지방세법에서 삭제됨에 따라 감면조례 규정 삭제(제11조 제1항)

## 4)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

-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받는 면허에 대하여 면허세를 면제하던 것을 ⇒ 면허세 면제 규정을 삭제하여 과세로 전환(제22조 제2항)

## 라. 감면범위 확대 및 감면 취득시점 확대

### 1) 공동주택에 대한 감면 확대

- 분양 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 받아 1가구 1주택이 되는 입주자중 전용면적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감면혜택이 없던 것을

⇒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이하의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 받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(제12조 제2항 제3호)

### 2)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감면 확대

- 농공단지에 2001년 12월 31일까지 휴·폐업된 공장에 대체 입주하는 자가 취득하는 당해 농공단지안의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던 것을

⇒ 2003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여 대체 입주하는 경우에도 도세를 면제(제27조)

## 마. 기타 조문 및 용어 정리 등

### 1) 일부 감면 조문의 정리

- 법인 또는 비영리 사업자 등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감면 받은 후 2년이상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대각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도세를 추징

(제5조~제9조, 제16조, 제17조, 제20조, 제25조, 제27조의 각 단서)

### 2) 용어 정리

- 관련 개별 법령에서 용어를 개정함에 따라, 감면조례상의 용어 정리(제8조)

- 사회교육법 ⇒ 평생교육법
- 사회교육시설 ⇒ 평생교육시설

## 5. 검토 의견

### 충청북도세감면조례개정조례(안)을 검토한바

- 상위 법인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,
  - 현행 충청북도세감면조례 부칙 제2조에 의하여 적용시한이 2000년 12월 31일자로 자동 폐지되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대한 감면기간 연장과
  - 국가유공자·장애인·교통·주택건설 등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한 분야는 적용시한을 3년간 연장하고,
  - 국가 유공단체 등 지방세법에 감면내용이 규정되는 분야는 폐지하면서
  - 기타 조례의 미비한 조문과 용어를 정리하는 것으로써
- 본 도세 감면조례 개정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됨.

붙 일 : 충청북도세감면조례개정조례(안)